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234
----------	------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0월 20일 오금란 의원 외 23인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오금란 의원)

1. 제안이유

-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보제공, 문화·정서·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운영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사업내용 등을 개정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수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됨.

<전부개정안의 조문배열>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일반원칙)	제2조 (정의)
제3조 (이용대상)	제3조 (운영 일반원칙)
제4조 (사업내용)	제4조 (이용대상)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 (사업내용)
제6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6조 (운영위원회)
제7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 (예산지원)	제8조 (재정지원)
제9조 (보조금의 관리)	제9조 (시행 규칙)
제10조 (시행 규칙)	
부칙	부칙

- 동 조례는 2011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 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을 위해 전부개정된 바 있음.

2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서울시 청각·언어장애인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현황

- ‘장애인 수어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농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의사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임.
- 농아인이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아울러 일컬으며, ‘25년 1월 말 기준 서울시의 청각·언어장애인은 69,452명으로 서울시 전체 장애인 386,316명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에는 ‘25년 2월말 기준 26개소(본부 1개소, 자치구센터 25개소)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수어통역센터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운영법인	비고
수어통역센터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463 ㎡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지원본부 1 지역센터 25

- ‘25년도 기준 소요예산은 7,959,693천원이며, ‘24년 기준 연 326,45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내용 및 상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 : 수어통역·상담·교육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수어통역 : 민원(법률·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 의료 등 각종 분야 통역
- 수어상담 : 가족문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상담
- 수어교육 :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교육 (한글, 컴퓨터 등)
- 쉼터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출처 : 『2025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서울시 내부방침)

<표> '24년 수어통역센터 제공서비스 실적

구 분	계	수어통역	수어상담	수어교육	행사 및 기타
건수(건)	326,459	125,884	170,238	25,332	5,005
인원(명)	579,950	236,351	183,455	25,376	134,768

나. 개정안의 세부내용

1) 조례 목적 및 정의 등 관련 (안 제1조~제2조)

- 개정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가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는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

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하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수어통역센터의 주요 사업이 수어통역, 수어상담, 수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음.
-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¹⁾, 제58조²⁾, 제59조³⁾ 및 제81조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⁵⁾, 한국언어수화법

-
- 1)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⁶⁾ 및 제16조⁷⁾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개정안 제2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의 정의체계를 기본으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 번역 기술·서비스를 말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서는 “한국수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사용한

-
- 4)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념들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취지 면에서 충돌되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다만, 개정안 제4항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 수어통역’의 경우, 관련법에 직접적인 정의는 없으나, ‘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운영 일반원칙 및 이용대상(안 제3조~제4조)

- 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일반원칙과 이용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제3조(운영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기반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욕구·연령·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해당 센터에 대한 운영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하게 됨.
- 해당 지침에서는 수어통역센터의 목적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센터를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복지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본목적을 제도적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상위 기준과

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 욕구 · 연령 · 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칙 역시, 상위지침에서 규정하는 수어통역서비스의 이용자 중심성 및 접근성 강화 취지를 확장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개정안 제3조 운영원칙은 상위지침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중심성과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완 · 구체화한 규정으로 정합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 이용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동일하게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3) 사업내용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수어통역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복지부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본사업인 상담지도와 출장수어통역, 서비스제공을 포함하면서,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센터의 운영목적을 구체화 ·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각 · 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2. 공공 · 의료 · 법률 · 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

4. 청각·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
5.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심리·정서적 지원
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복지부 지침에서는 수어통역센터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사업 내용 (『2025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349)
-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 관리
 - ▷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제2항의 출장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제4항의 수어교육은 복지부 지침에서 명시한 기본 사업내용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과 범위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공지능 수어번역 및 관련기반 조성은 현재 상위 지침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관련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센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구글에서는 수어를 음성텍스트로 실시간 번역하는 AI 모델을 공개하여 장애인 접근성의 기술혁신 사례를 보여줌.⁸⁾
 - 또한 제5항과 제6항도 복지부 지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거나, 이를 보완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내부지침에서도 수어통역센터의 사업내용을 수어통역, 수어상담, 수어교육, 쉼터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안은 이와도 부합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보임.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 : 수어통역·상담·교육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수어통역 : 민원(법률·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 의료 등 각종 분야 통역
- 수어상담 : 가족문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내방, 전화 등을 통한 상담
- 수어교육 :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교육 (한글, 컴퓨터 등)
- 쉼터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출처 : 『2025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계획』 (서울시 내부방침)

4) 운영위원회 운영 (안 제6조)

- 개정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8) 디지털포커스(2025.05.30.) “구글, 수어 번역 AI 공개....장벽을 허문다”
<https://www.digitalfocus.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39> (2025.12.08. 검색)

제6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수어통역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 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 · 군 ·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집행부서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서비스 욕구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센터의 역할을 전면 반영함으로써,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수행 역할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3 종합의견

- 수어통역센터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음.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정의 조항 및 운영 원칙, 사업내용 등 주요 규정은 「한국수화언

어법」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기본취지를 반영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가능한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금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34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오금란,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최재란, 홍국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정보제공, 문화·정서·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와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능 및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운영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3. “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욕구·연령·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
2. 공공·의료·법률·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
4. 청각·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리옹호 교육
5.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심리·정서적 지원
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사업내용)	△	[추계 곤란]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비용이 발생하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 없는 현재로선 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5조(사업내용)의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대한 지원비용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객관적 추정이 곤란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도입규모 결정 필요) 인공지능 수어번역 활용분야¹⁾에 따라 도입규모가 달라지므로 정책적 판단 전제 필요
 -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현재 활용분야에 대한 관점 차이²⁾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인공지능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규모에 대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유사사례(키오스크, 누리집 등) 등을 준용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1) [서비스 도입규모별 비용차이 상당] 키오스크나 누리집 내 시스템 안내와 같은 일부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와 일상생활 전반위에 대한 서비스의 도입비용 차이는 매우 크므로 활용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소요비용 추정이 가능할 것임
- 2) [수어특성을 고려한 도입신증성 고려] 수어는 언어의 일환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번역의 정확성 확보가 핵심요소이므로 해당 서비스 도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도입규모에 대한 관점차이(제정투입 적정성 및 효율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종합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